

의안 번호	제 289 호
승 인 년 월 일	1994. 8. 29. (제34회 제1차회의)

의 결 사 항
원안 가결

보은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 (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문 화 공 보 실)
제출년월일	1994. 7. 29.

# 보은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 (안)

## □. 제 안 이 유

주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주 요 골 자

가.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공보실장이 겸직한다. (제4조)

나. 회관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다. 회관내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 운영한다. (제6조)

1. 회관은 보은군의 직영으로 관리, 운영한다.
2. 여성회관시설 및 기타부대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총괄 관리한다.
3. 문화원시설은 보은문화원에서 별도 관리 운영한다.

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마.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당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때
2.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등)로써 무료입장 할때
4.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군수가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 보은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은문화예술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소) 회관은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75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회관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
2.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3.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 제공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관장)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공보실장이 겸직 한다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정원) 회관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시설물관리) 회관내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 운영한다

1. 회관은 보은군의 직영으로 관리, 운영한다
2. 여성회관시설및 기타부대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총괄 관리한다
3. 문화원시설은 보은문화원에서 별도 관리 운영한다

제7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회관사용(변경)신청서인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변경받고자하는 자는 3일전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④ 사용 (변경) 허가는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⑤ 회관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허가의 제한) 회관 사용허가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 2. 시설운영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
- 3. 기타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제 9조 (사용료)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2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용료는 허가당시 선납하여야 한다.
-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 하였을때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때
- 2.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 3.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로써 무료입장할때
- 4.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군수가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제12조 (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 사용허가를 받은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때
2. 회관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3.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때
4. 사회에 지탄이 되는 행위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때
5. 기타 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 군에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제13조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제반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원상 복구시는 허가권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대장 및 장부) 관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회관사용신청 (허가)사항 기록부 (별지3호 서식)
2. 업무일지 (별지4호 서식)

제15조 (점검보고) 관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운영의 적부 사항
3. 기타 회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1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1 >

# 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 운영

총 별	시 설 명	면 적	관 리
계		㎡ 4,510.36	
지 하 1 층 [ 902.76 ]	전기, 기계, 발전기실 다 목 적 실 [ 전시. 회의실. 교육장 ] 체육교실 [ 에어로빅 ]	520.76 250.00 132.00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1 층 [ 2,223.35 ]	대 강 당 [ 662석 ] 다 목 적 실 [ 시청각 · 음악감상 ] 관련 단체 사무실 [ 문화사랑방. 사무실 ] 무 대 분 장 실 [ 남 · 여 ] 기 타 [ 사무실. 창고. 화장실. 홀 ]	572.00 252.00 135.00 360.00 45.00 859.35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2 층 [ 967.49 ]	대 강 당 (185석) 음 향 · 조 명 · 영사실 사 무 실 · 기 술 교 육 장 상 설 매 장 도 서 실 기 타	168.00 20.16 252.00 145.00 382.33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3 층 [ 416.76 ]	교 양 교 실 [ 예절. 건강관리. 교양 ] 여 성 단 체 사 무 실	416.76	여성회관

# 보 은 문 화 예 술 회 관

1. 일반 시설 요금 표			적 요
구 분	기 준	요 액	
1. 대 강 당	1 일	원 행사 105,000 공연 95,000	○ 산정기준  1. 사용기간 가. 1 일 : 09:00 - 23:00 (1) 오전 : 09:00 - 13:00 (2) 오후 : 14:00 - 18:00 (3) 야간 : 19:00 - 23: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기간이 제1호 구분에 미달할때 에는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3. 1시간 초과시는 사용료의 20/100을 가산하고,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초과시는 사용료의 50/100가산하며 2시간이상 초과사용시에는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다음회 사용자가 있을시는 초과 사용불가)
	오 전	행사 30,000 공연 25,000	
	오 후	행사 40,000 공연 35,000	
	야 간	행사 50,000 공연 45,000	
2. 다목적실	1 일	40,000	
	오 전	15,000	
	오 후	15,000	
	야 간	20,000	
※ 기타 : 전시품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주최측 에서 책임진다.			

2. 부대 시설요금표			적	요
구분	기준	요금		
1. 악기		원		
피아노	1회	3,000		
2. 음향				
가. 마이크	2대	2,000	○ 마이크1대 추가시 1,000원 가산	
나. 무선마이크	1개	2,000		
다. 녹음료	1회	3,000		
3. 조명				
가. 종합 조명	1회	40,000	○ 기본조명 2개이상 4개이하 사용	
나. 기존 조명	1회	20,000		
다. 전시실조명	1회	20,000		
4. 영사기	1회	25,000		
5. 기타				
가. 천수막	1매	3,000		
나. 계라중	1회	5,000		
다. TV 녹화	1회	10,000		
라. TV 중계	1회	5,000		

3. 냉난방사용료			적	요
구분	기준	요금		
대강당	시간당	15,000원		
다목적실	시간당	10,000		

〈 별지 제1호 서식 〉

## 보은문화예술회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단체 또는 대표자성명		연락전화 번호	
			주민등록 번호	
2. 사용기간	19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			
3. 사용목적				
4. 주요행사내용				
5.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 첨부 : 주요행사 계획서

상기와 같이 사용코자 보은문화예술회관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또는 날인. 무인

보 은 군 수 귀 하





# 업 무 일 지

계	계장	관장	결
			재

시 설 물 사 용 현 황					
일 일 점 검	<input type="radio"/> 사용허가 (여·부) <input type="radio"/> 시설, 설비등 파손, 훼손, 누수 사항 (여·부) <input type="radio"/> 사용자 시설 설비 내역				점 검 의 견
지 시 받 인 사 항			조 치 한 사 항		
특 기 사 항					